



제주특별자치도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정부 현행 사회적거리두기 연장 방침에 따른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4.12.~5.2.) 운영계획 알림

1. 정부는 전국적인 수급부진과 감염이 지속되고 있으나 국민과 자연업자들의 사회·경제적 피해를 고려하여 방역수칙 강화보다는 시설(분야)별 기본 방역수칙 준수를 통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유지(4. 12.~ 5. 2.)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이에 따른 우리 도의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운영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해당 부서 및 단체에서는 소관 사회복지시설에 안내하여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바랍니다.

※ 감염병 4차 유행 위기상황대비 방역수칙 특별점검기간 운영 : 2021. 4. 12. ~ 4. 18.

붙임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운영계획 1부. 끝.

제주특별자치도



수신자 노인장수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제주시장(노인장애인 복지과장), 제주시장(노인장애인 복지과장), 제주시장(기초생활보장과장), 제주시장(여성가족과장), 서귀포시장(노인장애인 복지과장), 서귀포시장(여성가족과장),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장,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 협회장

주무관 김종욱 복지정책팀장 오영한 복지정책과장 양인정 보건복지여성 전결 2021. 4. 12. 국장 임태봉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5915 (2021. 4. 12.) 접수

우 6312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 (연동) / <http://www.jeju.go.kr>

전화번호 064-710-2812 팩스번호 064-710-2819 / monghanja@korea.kr / 대국민 공개

"친절매너, 질서지키기, 클린 제주만들기"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3주간 연장 방침에 따른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운영계획

2021. 4.

Jeju 제주특별자치도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

목 차

1. 상황 분석	1
2. 운영개요	2
3. 운영계획	2
① 집합·모임·행사분야	2
② 마스크 착용 의무화	4
③ 관광·여행 분야	4
④ 스포츠 관람	4
⑤ 대중교통	5
⑥ 다중이용시설	5
⑦ 국·공립 시설	8
⑧ 사회복지시설	9
⑨ 종교시설 및 활동	9
4. 지도·점검체계	9
5. 위반 시 조치사항	11
▶ 참고1. 시설(분야별) 핵심 및 기본 방역수칙	12
▶ 참고2. 5인 부서의 사적모임 금지 예외사항	16
▶ 참고3. 마스크 착용 의무화 관련 예외사항 등	43
▶ 참고4. 시설(분야별) 소관(단속)부서	44
▶ 참고5. 감염병예방법상 방역수칙 관련 조문	46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3주간 연장 방침에 따른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운영계획

- 전국적인 소규모 집단감염 지속 및 정체기(300~400명대) 이후 증가세(500~600명대) 전환 등 3차 대유행 시작 시기와 유사한 패턴 진행
 - * 확진자 비중 : (3월) 수도권 7 : 비수도권 3 → (4월) 수도권 6 : 비수도권 4
- 정부는 국민과 자영업자들의 사회·경제적 피해를 고려, 단계 상향을 통한 방역수칙 강화보다는 시설(분야)별 기본 방역수칙 철저 준수를 통한 현행 거리두기 체제를 당분간 유지할 방침

1 | 상황 분석

- (국내발생) 그간 300~400명대 내외를 유지하던 일 평균 확진자 수가 4월 들어서는 500명대를 넘어서는 등 정체기에서 증가세로 전환되는 양상

권역	단계	주간 일평균 확진자 발생 현황					비고
		3.7~3.13	3.14~3.20	3.21~3.27	3.28~4.3	4.4~4.7	
전체		428.3	415.9	422.1	477.3	519.0	
수도권	2	313.9	301.6	288.6	303.9	318.0	
비수도권	1.5	114.4	114.3	133.6	173.4	201.0	
제주	1.5	2.3	1.3	0.9	1.3	1.7	

- 특히, 확진자 접촉에 의한 환자 발생이 지속되는 가운데 ‘방역조치 완화’ 이후 다중이용시설과 연계된 집단감염이 함께 증가하는 추세
 - * (감염경로, 3.28~4.3) 집단발생 28.2, 확진자 접촉 39.9, 해외유입 3.7, 조사중 28.3
- (제주상황) 확진자 수는 1단계 수준을 유지중이나 외부유입으로 인한 불확실성 증가 → 4.7일까지 도내 확진자 15명 중 11명이 타지역 접촉자
 - 여행·모임 등 이동량 증가* 및 감염재생산지수(전국 1.0 초과), 잠복기 등을 고려할 때, 1~2주 이후 제주에 미치는 영향 등을 예의 주시할 필요
 - * 3월 말<주말 기준> 전국 이동량<6,507만건>은 작년 11월 초 3차 유행 직전 수준<7,403만건>에 근접

2 | 운영개요

- (단계조정)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 (처분기간) '21. 4. 12(월) ~ 5. 2(일)
- (처분대상) 제주특별자치도 전 도민 및 방문객(관광객 포함)
- (주요내용)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및 시설·분야별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 기본 방역수칙 계도기간 종료(3.29~4.11)

※ 현재 감염병 양상이 짧은 기간 내 호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거리두기 기간을 통상보다 긴 3주로 설정하였으며, 기간 내라도 감염 상황에 따라 단계 격상 가능

3 | 운영계획

1 집합·모임·행사 분야 (조치 유지)

- (적용대상) 예외사항을 제외한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명 부터의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 모임·행사 및 장소
⇒ “5인 부터 사적 모임 금지” 적용

- (5인 이상 금지 사적 모임 사례) 동창모임(동문회), 친구모임, 동호회, 직장 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카페, 정모 등과 같이 친목 형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적 모임·행사

* 돌잔치전문점에서 진행하거나 직계가족(8명 까지)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구성원만의 모임으로서 하는 돌잔치의 경우 예외적으로 금지대상에서 제외

→ 방역관리를 총괄할 수 있는 관리자·운영자가 상주하고 있는 식품위생법령상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된 시설로서 돌잔치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장을 의미하며, 돌잔치 외 다른 목적으로도 이용되는 음식점, 상설뷔페, 호텔, 예식장, 파티룸 등의 시설은 제외

- (예외사항) 5인 부터 사적 모임 금지 예외 대상은 '제주형 방역수칙' 적용

①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단, 8명까지 가능)
-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
- 입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사적모임'은 영유아*를 포함하여 8인까지 모임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영유아가 아닌 사람은 4명까지만 모임 가능

*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의한 만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

- 결혼을 위한 상견례로 모이는 경우(단, 8명까지 가능)

② 결혼식, 장례식의 경우 5인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예외

- 결혼식·피로연은 이벤트당, 장례식은 1일 기준 4㎡당 1명(최대 499명)

③ 행사, 시험 등의 경우 5인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예외

▲ (행사) 설명회, 공청회, 학술행사, 기념식, 집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강연, 훈련, 대회, 워크숍,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 등

▲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 1.5단계의 방역수칙 철저히 준수 하에 499명까지 가능하지만,

* 단, 500인 초과 시 방역관리계획 수립 후 지자체 협의 필요(공공주관은 생활방역위원회 심의)

-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는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 집회·시위,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는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적용

④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일성 인원 이상이 대면으로 보아야 하며,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 등 행정·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수행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모임·행사는 허용

⇒ 500명 미만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인원 초과 필요 시 소관부서 협의 후 진행

⑤ 시설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 집합금지 대상 시설은 아니나, 종목의 특성상 5인이상 모임 수 밖에 없는 스포츠의 경우 사실상 운영이 어려웠던 시설

* 등록된(관리자는 방역수칙 준수여부 확인) 실내·외 시설 풋살장, 축구장, 야구장 등에서 경기 개최하는 경우

☞ 관리자가 허가 없이 운동장, 공터 등에서 경기하는 경우 사적모임에 해당하여 위반

- 다만, 경기 이후 식사는 사적모임에 해당하여 5명부터는 함께 식사할 수 없음

⑥ 기타 정부가 지정한 5인부터 사적 모임 금지의 예외사항 등

※ 5인 부터 사적 모임 금지와 관련한 자세한 예외 사항은 붙임 Q&A 참조

- (위반 시) 5인부터 사적 모임 강행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감염병 예방법에 근거한 과태료 또는 고발 및 손해배상 등 구상권 청구 가능

②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 유지)

- 감염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는 유지

구분	대상시설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실내 전체 · 실외 :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경우 * 단, 일부 시설(활동)의 경우 마스크 착용 예외 적용(별첨)

③ 관광·여행 분야 (조치 유지)

- 리조트·호텔·게스트하우스·농어촌민박 등 숙박시설*에 대한 객실 이용 제한은 해제 하되,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는 유지

* 관광진흥법상 숙박시설, 공중위생법상 숙박업소, 농어촌민박, 외국인도시민박업 등

⇒ 개인의 방역 행동 수칙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시설별 수칙과 별도로 항시 적용

- 숙박시설 파티 관련

- (의무사항) 숙박시설 주관·주최·연계 파티 금지*, 행사 및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및 행사·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 안내문 게시, 로비 등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안내 등

* 연말연시 파티, 바비큐 파티, 클럽 파티, 게스트하우스 파티 등

- (권고사항) 개인 주최하는 행사·파티 금지 강력 권고

④ 스포츠 관람 (조치 유지)

- 관중 수용범위 내에서 30%까지 입장 허용 등 제한적 운영

⑤ 대중교통 (조치 유지)

- 제주형 특별방역 행정조치 내 대중교통(버스·택시 등)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항 유지, 이용 중 음식 섭취 금지(단,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항공기 및 선박(국제선 제외)은 이용 중 음식 섭취 금지(단,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권고

⑥ 다중이용시설 (기본 방역수칙 반영)

시설별 방역수칙은 '붙임 1.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참조

○ 5인 부터의 사적 모임 관련 다중이용시설 준수사항

관리자·운영자 수칙	참석자 수칙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관리자·운영자는 아래 사항 모두 준수 ① 5인 이상 예약하거나 동반입장하는 이용객을 대상으로 사적 모임의 목적으로 해당 시설을 이용하려는 것인지 확인 ② 시설 내 이용객이 5인 이상 모여 있는 경우나 5인 이상 모여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사적 모임인지 확인 ▶ 위 ①, ②경우를 비롯하여 이용객이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관할 지자체에 즉시 신고 내지 퇴거 조치	▶ 5인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 등 예외사항 시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및 이용 금지

○ 시설별 주요 방역수칙 요약표

구분	다중이용시설별 주요 방역수칙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공통수칙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제주안심코드 등), 환기·소독, 방역관리자 지정 등(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유흥시설 5종, 홀덤펍	▶ <u>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수기명부작성 불가)</u> ▶ <u>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u> ▶ <u>가창시 마스크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u> ▶ <u>주사위,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시 장갑착용</u>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u>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u> ▶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노래연습장	▶ <u>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불가피한 경우 수기명부작성)</u>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이용자(손님)가 이용한 방의 마이크 등 공용물품은 이용 종료 직후 소독 실시 및 이용 직후 10분 이상 환기(기계환기시설 없는 경우 30분 간 환기)
실내 스탠딩공연장	▶ 음식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식당·카페 (무인카페 포함)	▶ <u>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u> ▶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사·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파티룸	▶ <u>이용인원 제한(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u> ▶ <u>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 이상)</u>

구분	다중이용시설별 주요 방역수칙 : 중점 · 일반관리시설 등
실내체육시설 (실내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학원·교습소 (독서실 제외) 직업훈련기관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결혼식장 · 피로연	▶ 시설 면적 4㎡당 1명 및 이벤트당 500인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 시설 면적 4㎡당 1명 및 빈소별 1일 누적 500인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u>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u> ▶ <u>목욕장업 특별 방역수칙 적용</u>
영화관	▶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 상영관 내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공연장	▶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 공연장 내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PC방	▶ 다른 일행 간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음식 섭취 금지(ㄷ자 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오락실·멀티방 등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독서실·스터디카페	▶ 다른 일행 간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u>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u>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푸드존 등 별도 지정공간 예외)
놀이공원·워터파크	▶ 수용가능인원의 50%로 인원 제한
아·미용업	▶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구분		다중이용시설별 주요 방역수칙 : 중점 · 일반관리시설 등
	백화점·대형마트	▶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 마스크 착용 ▶ 주기적 환기·소독
	마트·상점 (300㎡ 이상)	▶ 마스크 착용 ▶ 주기적 환기·소독
	전시회장·박람회장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국제회의장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7 국 · 공립 시설 (조치 유지)

○ (실내·외 시설) 수용 인원의 '50% 이하로 제한적 운영'

- 소관부서에서는 시설별 방역지침 수립 후 철저히 관리 운영
- 박물관·비출판 등 문화산업시설의 경우 사전예약제원장(사립 포함)

○ (실내 체육시설) 수용 인원의 '30% 이하로 제한적 운영'

- (이용대상) 일반인 포함 전체 개방 * 기존은 전문체육인만 허용
- (운영시간) 09:00 ~ 22:00 * 시설별 여건에 따라 탄력 운영

▲ 사전예약제(온라인 및 전화예약) 운영, 이용자 간 거리두기, 시설 주기적 소독, 샤워 · 탈의실 등 부대시설 이용 금지, 기타 핵심 방역수칙 준수 등

○ (실외 체육시설) 수용 인원의 '30% 이하로 제한적 운영'

- (이용대상) 일반인 포함 전체 개방
- (운영시간) 09:00 ~ 22:00 * 시설별 여건에 따라 탄력 운영

▲ 사전예약제(온라인 및 전화예약) 운영, 이용자 간 거리두기, 시설 주기적 소독, 샤워 · 탈의실 등 부대시설 이용 금지, 기타 핵심 방역수칙 준수 등

8 **사회복지시설 (조치 유지)**

- 시설별 방역지침 수립 후 철저한 방역관리 하에 운영하되,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고위험군 시설은 **시간제 운영 및 사전예약제 전환** 등 추가 방역강화

→ 소관부서에서 중앙부처(복지부 등)의 지침을 기반으로 운영기준 마련

구분	이용시설 종류
아동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노인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주·야간보호시설
장애인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9 **종교시설 및 활동 (조치 유지)**

-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 수의 30% 범위 내 제한적 허용, 종교시설 주관 모임 활동 및 행사*는 금지(식사 및 숙박 포함)

*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 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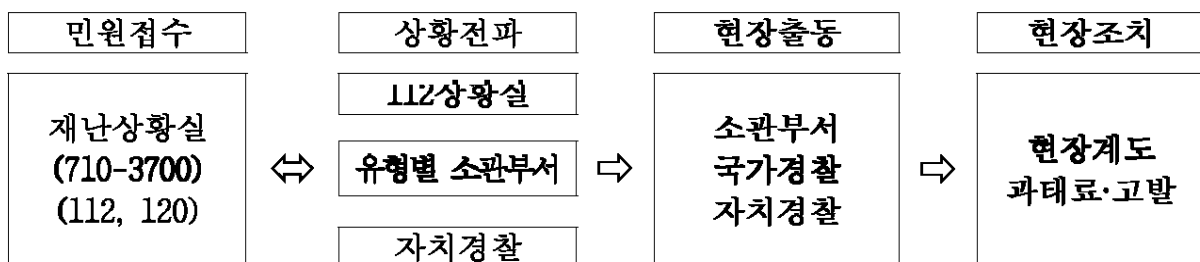
- **종교 관련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

* TCS 국제학교, IEM 국제학교, CAS 기독교방과후 학교 등

4 **지도·점검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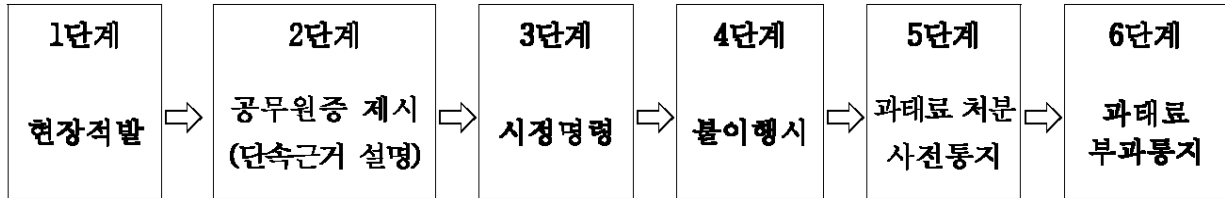
-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지도·점검 체계

- 방역수칙 위반 신고창구는 **재난상황실(710-3700)**로 일원화
- **민원접수 처리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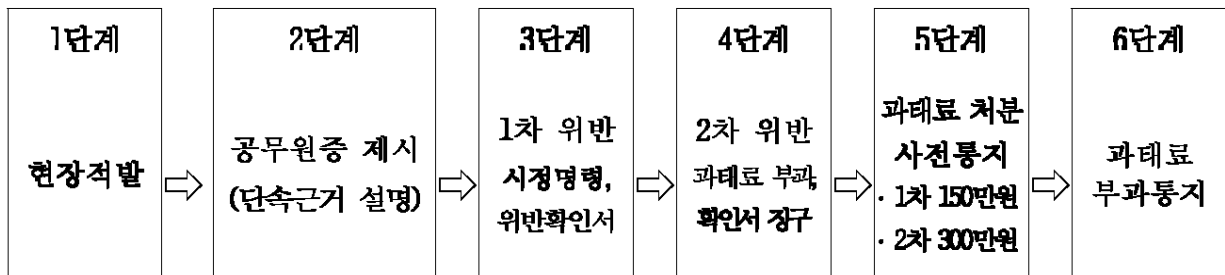


○ 단속(점검)절차

① 이용자 : 과태료 10만원(마스크 미착용, 5인 이상 사적모임, 시설 이용자 등)



② 당사자(관리·운영자) : 과태료 1차 150만원, 2차 300만원



○ 유형별 소관부서

① (소관부서 있을시) 소관부서에서 단속 및 과태료 부과

② (소관부서 없을시) 자치경찰단, 읍면동에서 현장조치(점검)하고,
과태료는 해당 읍면동에서 부과

- 단, 휴일·심야 민원 등 소관부서에서 동행 출동이 어려울 경우
행정시별 당직실에서 현장조치

▶ 읍면동에서 과태료 부과 시 행정시장 명의로 부과 필요

- 국가경찰 또는 자치경찰단에서 별도 출동하여 발송한 적발 통보 조치
공문은 시정명령으로 보며(명단관리 필요) 추후 재적발 시 과태료
처분 절차 진행

5 위반 시 조치사항

- (기본원칙) 집단감염 발생 장소, 고의성 및 방역수칙 위반 정도가 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는 예외 없이 무관용 원칙 적용

< 근거 조항(「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행정명령 종류	발령 근거	위반 시 제재
집합제한·금지명령	제49조제1항 제2호	300만원 이하 벌금(제80조제7호)
방역지침 준수명령	제49조의제1항 제2호의2~제2호의4	과태료(제83조제2항, 제4항)

- (과태료 처분) ①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 ②고의성이 높고 위반 정도가 심한 경우, ③기본 방역수칙을 지속 위반하여 감염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 (집합금지) ①핵심 방역수칙을 2가지 이상 위반하는 등 고의성이 높고 위반 정도가 심한 경우, ②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하여 감염이 발생한 경우, ③방역수칙 위반으로 처분받은 사업자가 제차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
- (벌금 부과) 집합금지를 위반한 경우는 시정명령 없이 고발 조치
- (그외 행정조치) ①제난지원금^{중기부·고용부}, 생활지원비^{질병청}, 손실보상금^{복지부} 지급 시 제외 또는 감액지급 검토, ②구상권(손해배상청구권) 행사 등

참고1**시설(분야)별 핵심 및 기본 방역수칙****개인 방역수칙****□ 개인방역 5대수칙**

- 입과 코를 가리고 마스크 착용하기, 2m(최소 1m) 거리 두기
- 아프면 검사받고, 집에 머물며 타인과 접촉 최소화
- 30초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에
- 최소 1일 3회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 직장동료, 함께 사는 가족을 제외한 지인과는 비대면으로 만나기

□ 상황별 주요 수칙**(1) 일할 때**

- 아프면 출근하지 않기, 증상 있으면 즉시 퇴근
- 재택근무, 유연근무, 휴가 적극 활용 및 회의·출장은 가급적 영상회의
- 사무공간 및 공용공간에서 상시 마스크 착용, 음식 섭취 자제
- 공용물품 사용하지 않기

(2) 식사할 때

- 식사는 짧게, 대화 자제, 먹지 않을 때는 마스크 쓰기
- 지그재그 앉거나 한 방향으로 앉기, 한 칸 띄우기
- 혼잡한 식당 피하고, 포장·배달 활용하기, 개인 접시 덜어 먹기

(3) 운동할 때

- 가급적 야외에서 혼자 운동하기, 실내 운동 시 마스크 쓰기, 2m 거리 두기
- 개인 물품 사용 (개인 컵, 매트 등), 탈의실 등 공용공간 피하기
- 운동 전·후 모임, 음식 섭취하지 않기
- 신체접촉이 있는 운동, 마스크 지속 착용 어려운 격렬한 운동 자제하기

(4) 공동 생활할 때

- 가급적 1인 1실 사용하고, 침대 간 2m(최소 1m) 거리 두기 유지
- 공용공간에서 반드시 마스크 착용 및 대화 자제, 정해진 장소 외 취식 금지
- 손이 많이 닿는 곳은 매일 표면 소독
- 외부인 방문이나 만남 자제, 아프면 검사받기

시설 방역수칙

< 시설 공통 방역수칙 > * 시설별 방역수칙에서 의무화되지 않은 사항은 강력 권고

구분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공통 수칙	① 방역수칙 준수	
	■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 - 이용가능 인원을 산정하고 게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 방역수칙 준수
	②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	■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
	③ 출입자명부 작성·관리	
	■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제주안심코트 등), 간편전화 체크인 작성 안내 ■ 출입명부는 4주보관 후 폐기 * 수기명부는 불가피한 경우(단순 조작미숙은 미인정)만 사용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의 작성 제외 가능	■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제주안심코트 등),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의 작성 제외 가능
	④ 마스크 착용	
	■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
	⑤ 음식섭취 금지	
	■ 음식물 섭취 금지 안내 * 단 물,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 음식물 섭취 금지 * 단 물,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⑥ 손씻기	
	■ 손 소독제 비치 또는 손 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 손 씻기 또는 손소독하기(권고) -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소독, 손씻기
	⑦ 밀집도 완화(단계별 기준 적용)	
	■ 단계별 이용인원 기준 적용 - 이용자간 거리두기 2m(최소1m)이상 준수	- 시설별 안내된 거리두기 방법 준수
	⑧ 환기하기	
	■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 환기대장 작성 및 환기시간 게시 * 지하, 창문이 없는 시설은 환기횟수 증가	

구분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⑨ 소독하기	
	■ 일 1회 이상 소독(시설별 차등적용) - 소독대장 작성 * 공용물품, 출입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	
	⑩ 기타	
	■ 방역관리자 지정 ■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대장작성)	

< 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 >

구분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흡연실	▲ 사람간 1M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위치 표시 ▲ 한쪽 방향을 보도록 표시 ▲ 대화 금지 안내	▲ 사람간 1M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표시된 자리에서 흡연
		▲ 흡연실 내 대화 금지
화장실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 쓸 설 때 1m 거리눌 수 있도록 간격 표시 ▲ 사용 전/후 반드시 손씻기 안내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대기 시 앞사람과 간격 1m 거리두기 ▲ 사용 전/후 손씻기
탈의실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 탈의실 내 대화 금지 안내 ▲ 가능한 락커 한 칸 띄어 사용 안내 ▲ 손소독제 배치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탈의실 내 대화 금지 ▲ 공용물품 만진 후, 손씻기 또는 손소독(권고)
샤워실	▲ 샤워실 내 대화 금지 안내 ▲ 짧은 시간 이용하기 안내 ▲ 샤워부스 한 칸 띄어 사용안내 ▲ 공용물품* 배치 자제 * 로션 수건 드라이어기 등	▲ 샤워실 내 대화 금지 ▲ 가급적 짧은 시간 이용하기 ▲ 샤워부스 한 칸 띄어 사용안내 ▲ 가급적 개인 물품 지참

구분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흡연실	▲사람간 1M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위치 표시 ▲한쪽 방향을 보도록 표시 ▲대화 금지 안내	▲사람간 1M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표시된 자리에서 흡연 ▲ 흡연실 내 대화 금지
화장실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 줄 설 때 1m 거리둘 수 있도록 간격 표시 ▲ 사용 전/후 반드시 손씻기 안내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대기 시 앞서람과 간격 1m 거리두기 ▲ 사용 전/후 손씻기
탈의실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 탈의실 내 대화 금지 안내 ▲ 가능한 락커 한 칸 띄어 사용 안내 ▲ 손소독제 비치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탈의실 내 대화 금지 ▲ 공용물품 만진 후, 손씻기 또는 손소독(권고)
샤워실	▲ 샤워실 내 대화 금지 안내 ▲ 짧은 시간 이용하기 안내 ▲ 샤워부스 한 칸 띄어 사용안내 ▲ 공용물품* 비치 자제 * 로션, 수건, 드라이어기 등	▲ 샤워실 내 대화 금지 ▲ 가급적 짧은 시간 이용하기 ▲ 샤워부스 한 칸 띄어 사용안내 ▲ 가급적 개인 물품 지참
휴게실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 이용자 간 1m 이상 거리두기 안내 ▲ 대화 자제 안내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이용자 간 1m 이상 거리두기 ▲ 대화 자제
탕비실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 동시 이용은 가급적 2명까지로 제한 안내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동시 이용은 가급적 2명으로 하기
민원 창구	▲ 투명 가림막 설치 권장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 대기선 및 좌석 거리두기 표시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대기 시 간격 1m 거리두기

참고2 | 5인 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예외사항

1 공통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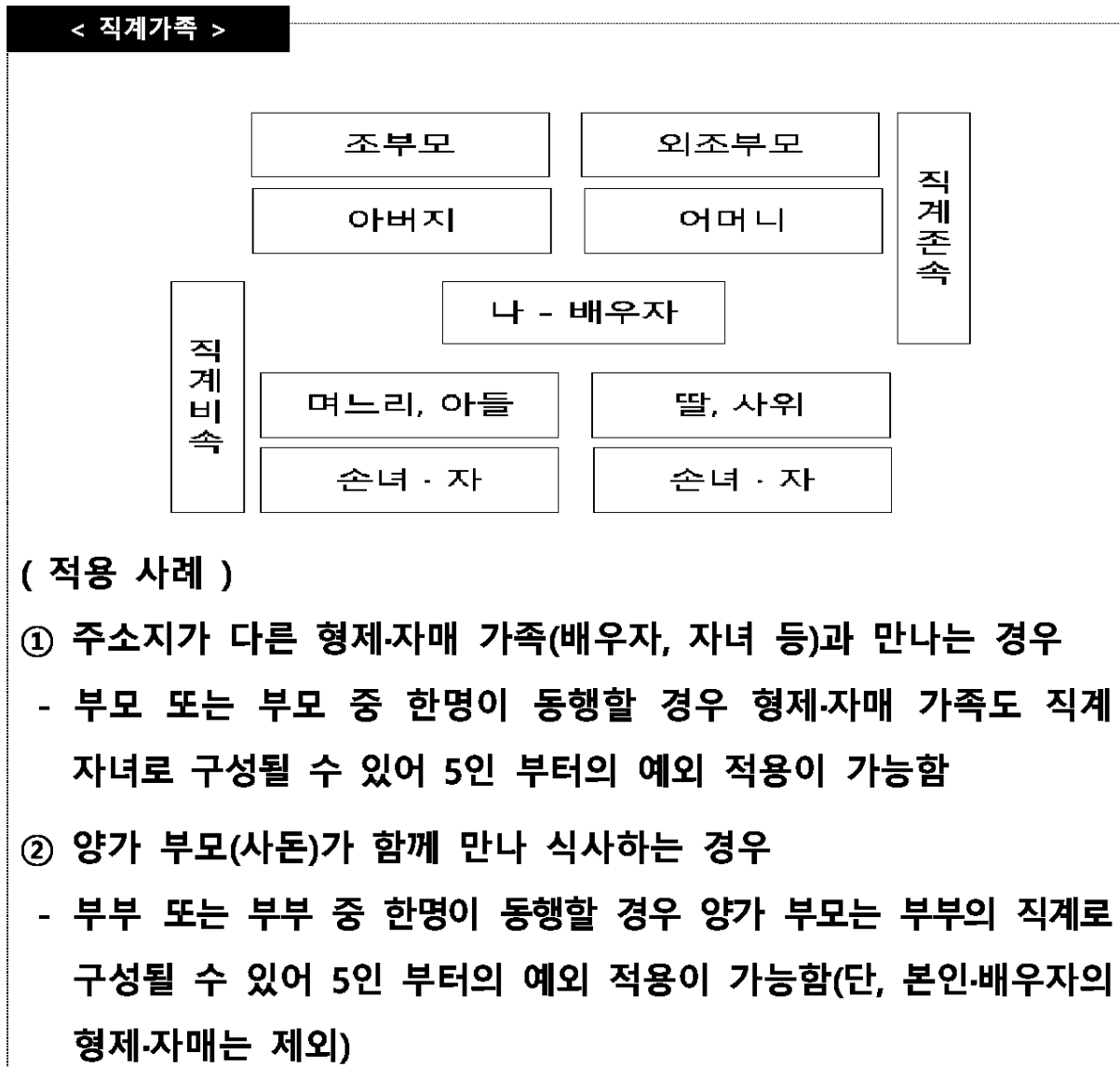
Q1.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는 무엇을 말하나요?

-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명부터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되는 일시적인 집합, 모임활동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함
 - 동창회(동문회), 친구모임,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놀이, 신년회, 놀잔치*, 회갑·질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를 금지
- ※ 단 5인 부터 사적모임 금지로 인해 사실상 영업자체가 제한된 돌잔치 전문점은 예외적으로 핵심방역수칙 준수하에 결혼식장과 같이 거리두기 단계별 인원 적용
- '5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
 - * 유흥종사자는 5명의 범위에 포함

Q2.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의 예외사항이 있나요?

- 5명부터의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것은 가족·지인간 모임을 통한 일상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규모와 상관없이(4명까지의 모임이라고 하더라도) 최대한 모임을 자제하라는 취지임
- 다음의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예외적으로 허용
- ❶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기숙생활) 포함

- 직계가족(직계존비속)이 모이는 경우(단, 8인까지 가능)



-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 돌봄 인력은 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 관련 업종 종사자 또는 자격증 소지자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 6세 미만의 영유아를 동반하는 경우(단, 8인까지 가능)
 - *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하며,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 가능(5인 이상 금지)
- 결혼을 위해 양가 간 상견례 모임을 하는 경우(단, 8인까지 가능)

② 결혼식(피로연) 및 장례식

- 개별 결혼식(피로연)·장례식은 거리두기 제주형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결혼식(피로연)은 이벤트 당 누적 500명 미만, 장례식은 1일 누적 500명 미만
- * 단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로 인해 사실상 영업자체가 제한된 돌잔치 전문점은 예외적으로 핵심방역수칙 준수하에 결혼식장과 같이 거리두기 단계별 인원 적용

③ 행사, 각종 시험

- 설명회, 공청회 등 행사는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100명까지 가능(500명 이상은 자체 방역계획수립 후 지자체(소관부서) 신고·협의)
- 시험의 경우 분할된 공간(예: 교실) 내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499명까지 가능(500명 이상은 자체 방역계획수립 후 지자체(소관부서) 신고·협의)

▲(행사)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워크숍 등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 다만, 구호, 노래, 장시간의 설명·대화 등 위험도 높은 활동 동반하는 학술행사, 집회·시위,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는 100인 미만으로 인원 제한

※ 전시·박람회, 국제회의는 시설 면적으로 인원 제한(4㎡당 1명)하며, 모임·행사 인원 제한은 미적용하되 500명 이상은 자체 방역계획수립 후 지자체(소관부서) 신고·협의

④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일정 인원 이상이 대면으로 모여야 하며,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 등 행정·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수행 및 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모임·행사는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및 거리두기 단계 모임·행사 인원제한(수도권 99명, 비수도권 499명까지 가능) 적용 제외
- * (예)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법안처리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송출 등

⑤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 * (예) 실내·외 사설 풋살장, 축구장, 야구장 등에서 경기 개최하는 경우